



대인배상 합의서

갑 : 피해 자주소 :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

성명 : 홍길동

을 : 가해 자주소 :

(피보험자)성명 :

공동불법행위자주소 :

성명 :

2018 년 10 월 30 일 10 시 00 분경 마포구 동교동 동교동삼거리 에서 '을' 소유의 11로1111 호 차량 (다른차량 : _____ 소유의 _____ 호 차량)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'갑'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'갑'(또는 '갑'의 상속인)은 '을' 또는 '을'의 대리인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 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, 어떠한 이유로든지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. 또한 담당손해사정사로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및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.

수령금액 금 일백만 원정 ₩ 1,000,000)

내 용

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

대인배상 보험금 지급항목

부상보험금	✓	후유장애보험금		사망보험금	
위자료	✓	위자료		위자료	
휴업손해	✓	상실수익액		상실수익액	
간병비	✓	가정간호비		장례비	
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	✓				
적극손해(치료관계비)	✓				

* 동일 항목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,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.

2018 년 10 월 30 일

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**홍길동 홍길동인** 주민등록번호 **761125-1111111**
위 가해자 또는 대리인 성명 (인)

※ 보험금 지급 종결 시, 최종 보험금 지급내역 등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드립니다.

▶ 송금의뢰

상기 보험금을 다음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

은행명	신한	계좌번호	111-111-111111	예금주	홍길동
-----	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

송금 의뢰인 : **홍길동 홍길동인** 주민등록번호 : **761125-1111111** (연락처 : **010-1234-1234**)